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9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인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
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조례의
명칭에 부합하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지
못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명시된
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, 건강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가는데
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안 제3조에서 건강가정을 위한 필요 제도와 여건 조성,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- 안 제4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,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, 센터의 조직에 대한 사안들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이 외 가족실태조사 및 건강가정 지원, 센터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건강가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